

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907호, **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인하여 기금 수입계획이 변경되고,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어르신 돌봄 시범사업 도입,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사업 확대 및 변경으로 인하여 기금 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2023년 수입계획 상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878백만원에서 984백만원으로 106백만원 증가됨

나. 2023년 지출계획 상 정책사업비에서 비융자성 사업(스마트 돌봄을 위한 시범사업) 782백만원, 융자성 사업(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 및 운영지원) 230백만원이 증가하였음. 이에 따라 예치금 금액이 1,430백만원에서 524백만원으로 906백만원 감소하였음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- 수입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천원, %)

장/관/항/목	당 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합 계	1,738,987	1,845,474	106,487	6.1
세외수입	291,442	291,442	-	-
경상적세외수입	16,993	16,993	-	-
이자수입	16,993	16,993	-	-
공공예금이자수입	16,993	16,993	-	-
임시적세외수입	274,449	274,449	-	-
기타수입	274,449	274,449	-	-
그외수입	274,449	274,449	-	-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1,447,545	1,554,032	106,487	7.3
보전수입등	877,641	984,128	106,487	12.1
예치금회수	877,641	984,128	106,487	12.1
예치금회수	877,641	984,128	106,487	12.1
내부거래	569,904	569,904	-	-
예탁금및예수금	569,904	569,904	-	-
예탁금이자수입	569,904	569,904	-	-

- 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천원, %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 초 (A)	기금운용계획 변경안 (D)	증 감 (E=D-A)	증 감 륜 (F=E/A)
합 계	1,738,987	1,845,474	106,487	6.1
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	305,800	1,318,800	1,013,000	331
어르신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 지원	40,000	40,000	-	-
어르신 정보화 교육	40,000	40,000	-	-
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(307-11)	40,000	40,000	-	-
디지털 돌봄 역량 강화 추진	-	300,000	300,000	순증
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 탁사업비 (308-11)	-	300,000	300,000	순증
스마트 노인복지관 조성	-	450,000	450,000	순증
민간위탁사업비 (402-03)	-	450,000	450,000	순증
스마트장비 연계 재가어르신 복약정서 지원	-	33,000	33,000	순증
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(307-11)	-	33,000	33,000	순증
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 자금 융자 및 운영 지원	100,000	330,000	230,000	230
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(307-11)	100,000	330,000	230,000	230
어르신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	97,000	97,000	-	-
시설종사자 역량강화	97,000	97,000	-	-
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(307-11)	97,000	97,000	-	-
저소득 어르신의 자활지원	68,800	68,800	-	-
어르신 주거지원	68,800	68,800	-	-
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(307-11)	68,800	68,800	-	-
재무활동	1,430,187	523,674	△906,513	△63
보전지출	1,430,187	523,674	△906,513	△63
여유자금 예치	1,430,187	523,674	△906,513	△63
행정운영경비	3,000	3,000	-	-

Ⅲ. 검토의견

-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'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 1억 600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1억 600만원)에 반영하고,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'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'(10억 1,300만원)를 증액하고 예치금(△9억 600만원)을 증·감조정하는 등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¹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①정책사업인 **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**를 당초 지출계획보다 331.2%, 10억 1,3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고, ②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△63.3% △9억 600만원 감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
- 아울러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'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'에 10억 1,3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는 것으로 **디지털 돌봄 역량강화 추진(3억원)**, **스마트 노인복지관 조성(4억 5,000만원)**, **스마트장비 연계 재가어르신 복약·정서지원(3,300만원)**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, **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용자 및 운영 지원(2억 3,000만원)**은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는 것으로서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〈표 3-1〉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	당 초 (A)	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지출합계	1,738	1,845	106	6.1
어르신복지 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	305	1,318	1,013	331.2
어르신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지원	140	1,153	1,013	823.5
어르신 정보화 교육	40	40	-	-
디지털 돌봄 역량 강화 추진	-	300	300	-
스마트 노인복지관 조성	-	450	450	-
스마트장비 연계 재가어르신 복약·정서 지원	-	33	33	-
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 및 운영 지원	100	330	230	230.0
어르신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 육	97	97	-	-
저소득 어르신의 자활 지원	68	68	-	-
일 반 예 산 (재 무 활 동)	1,430	523	△906	△63.3
보 전 지 출	1,430	523	△906	△63.3
여 유 자 금 예 치	1,430	523	△906	△63.3
행 정 운 영 경 비 (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)	3	3	-	-

※ 자료근거 :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지출계획,
②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('23. 5.30) 재구성

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²⁾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○ 다만, 우리 시의회는 지난해 12월16일 「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」을 의결한 바,³⁾

- 동 계정의 단위사업중 **어르신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지원**의 경우, 지출액을 1억 4,000만원으로 의결하였음에도 제출된 운용계획변경안중 해당 단위사업의 지출액은 4,000만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, 증감, 증감률 모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됨
- 시의회에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지출계획의 변경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 지출액의 변동추이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나,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부정확한 내용이 기재된 것에 대해 별도 설명이 필요한 것은 물론 주의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
2)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제5조(노인복지계정)

② 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
2. 노인단체 지도·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
3.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
4. 노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
5.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
6. 저소득노인의 자활 지원
7. 노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
8. 노인교육사업
9. 민간의 창의적인 노인복지사업 발굴지원
10.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3) ① 의안번호 : 379

② 안건명 :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

③ 안건제출 : 2022.11. 1

④ 심사경과 : 수정가결 (2022.12.16)

〈표 3-2〉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 (제출된 내용, 오류 수정전)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	당 초 (A)	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어르신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지원	40	40	-	-



〈표 3-3〉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 (오류 수정후)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	당 초 (A)	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어르신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지원	140	1,153	1,013	